성주군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8. 2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공무원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0381호, 2007. 11.13.) 되어 여비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비 실비정산제 실시에 따라 지급기준, 지급절차, 지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성주군여비지급조례」를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함

나. 여비지급 등급의 조정

현 행	개 정
· 제2호 2~3급(상당)	제1호 라목 2~3급 국장급(상당)
· 제3호 4~5급(상당)	제2호 가목 3급 과장급~5급(상당)
· 제4호 6급이하	제2호 나목 6급 이하

다. 여비의 지급방법

- 운 임 : 실비(정부구매카드사용 의무화)
- 숙 박 비 : 실비(정부구매카드사용 의무화)
- 일 비 : 정액
- 식 비 : 정액

라. 여비 실비정산제

-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하여 여행 완료 후 1주일이내 증거서류를 갖추고 정산 신청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1)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발췌 별첨)

2)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개정 통보

- 도 회계과 - 102(2008.1.3)호 관련

나. 예산관련 사항 : 해당없음

다.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여비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로 본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성주군관용차량 관리규칙」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